군산시의회 사무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11월 2일

군산시 훈령 제480호

군산시의회 사무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군산시의회 사무전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의회 단위업무별 전결처리 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의회운영	가	의회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의회 관련 조례, 규칙 등 제정,개정, 폐지 입안 공포	기안				○
	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라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기안				○
	마	의원 간담회 운영	기안				○
	바	집행기관과의 협조관계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사	전체 의원 연수계획 수립	기안				○
	아	의원 국외연수 허가 및 계획서 수립	기안				○
	자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기안				○
	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카	자매도시 교류 운영	기안				○
의원관련	가	의원등록	기안		○		
	나	의원사직 허가, 사직허가 결정 통지	기안				○
	다	의원 청렴, 윤리,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의원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기안	○			
	마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기안	○			
	사	의원의 강의신고	기안				○
	아	청가 허가	기안				○
	자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
의사관련	가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기안	○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기안	○			
	다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			
	라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안			○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기안			○	
	바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기안	○			
	사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의사 관련	아	의원 국외연수 계획 수립 및 심사요구	기안			○	
	자	의사일정 협의	기안			○	
	차	간담회·설명회 등 운영	기안			○	
	카	현장방문	기안			○	
	타	자문 요청 및 회신	기안	○			
복무	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 사무국장	기안		○		
		2) 전문위원(5급)	기안		○		
		3) 6급 이하	기안	○			
	나	휴가·병가					
		1) 사무국장	기안		○		
		2) 전문위원(5급)	기안		○		
		3) 6급 이하	기안	○			
	다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5급)	기안		○		
	라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6급이하)	기안	○			
	마	공무국외 연수계획 및 연수자 결정	기안		○		
	바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요구	기안		○		
문서	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기안	○			
	라	유관기관 자료제출	기안		○		
기획	가	사무국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나	사무국 연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안		○		
예산 및 회계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 포함)	기안		○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제출	기안	○			
	다	예산배정 요구	기안	○			
	라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		
	마	의원 및 사무국 예산지출관련 방침	기안		○		
	바	세입·세출 결산	기안		○		
	사	예산집행품의					
		1) 3,000만원 초과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예산 및 회계		2) 3,000만원 이하	기안	○			
	아	급여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			
	자	지출계산서 제출	기안	○			
	차	재물조사	기안	○			
	카	물품 수급관리	기안	○			
인사	가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기안				○
		2) 공무원 휴직 인사 발령	기안				○
		3)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안				○
		4)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기안				○
		5) 호봉승급 발령 통보	기안		○		
	나	사무국내 전보	기안				○
	다	직원포상 추천	기안				○
	라	근무성적 평정					
		1) 근무성적 평정 계획 수립	기안				○
		2)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구성 운영	기안		○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안				○
		4)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안				○
	마	사무국장 사무 인수·인계	기안				○
	바	사무인수·인계(5급 이하)	기안		○		
	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기안				○
	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계약	기안		○		
	자	연간교육 계획 수립	기안				○
포상	가	의장 포상	기안				○
소송 등	가	소송 응소 계획(수행) 보고	기안				○
	나	소송결과 보고	기안				○
행사	가	전체 의원단위 중요행사	기안				○
	나	기타 일반행사	기안		○		
공인 관리	가	공인신조	기안				○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공인관리	다	공인관리	기안		○		
보안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		
방청관리	가	방청권 교부 및 안내	기안	○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			
	나	배차신청 및 허가	기안	○			
	다	차량운행일지	기안	○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	기안	○			
청사관리	가	청사 방호	기안	○			
	나	청사시설 개·보수, 장비유지 관리	기안	○			
	다	음향시설 및 방송 장비 관리 및 운영	기안	○			
	라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기안	○			
의회운영일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기안				○
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회의소집 공고	기안				○
	다	의사일정 작성,협의	기안				○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
	마	본회의장 의사 진행 관련 문건 작성	기안				○
안건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기안				○
시정질문	가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처리	기안				○
	나	출석요구 통지	기안				○
	다	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
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	기안		○		
의정백서	가	의정백서 발간	기안				○
회의록	가	회의록 발간	기안	○			
	나	회의록 자구 정정	기안				○

구분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사국장	위원장	의장
회의록	다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	기안		○		
본회의장 관 리	가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기안				○
	나	경호권 발동	기안				○
의원 청원	가	청원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기안				○
진정서 접수및처리	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
	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기안				○
홍보 및 보도 자료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기자회견 및 인터뷰, 기획보도	기안				○
	다	의장 및 의원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		
	라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	기안				○
	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기안	○			
	바	방송실 운영	기안	○			
	사	신문스크랩	기안	○			
의회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기안				○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군산시 공고 제2026-2397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전액 감면으로 인한 운영 재원 부족을 완화하고, 수강생의 적정 부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강료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등 감면율을 전액 감면에서 100분의 50 감면으로 조정(별표 1 제3항)

나. 수강료 등 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다. 감면을 적용하는 수강 강좌 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우)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 063-454-2244, FAX 454-6005)
- 전자우편 : 5JUNESEO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 (☎ 063-454-2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 기준

① 사용료 징수 기준 (제10조 제1항과 관련)

구분	사용료	비고
시설 사용	무료	운동시설 제외

② 수강료 징수 기준 (제10조 제3항과 관련)

구분	수강료 및 사용료	비고
강좌 수강	월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운동시설 사용	월 20,000원 이하	

③ 수강료 등 감면 기준(제10조 제5항과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50% 감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50%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50% 감면

군산시 공고 제2026-2408호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5항(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2025.12.30.)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제5조):

○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6조)

○ 지원신청(제9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11조)

○ 변호인 보수의 반환(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입법예고 : 2026. 11. 2. ~ 11. 23. <21일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 063-454-2305 / (FAX) 063-454-6006

(전자우편) ssgghh46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기획계(063-454-2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

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임비용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산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방법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보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선임비용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 당 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 당 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 건 번 호		고소 · 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현숙
연락처	(063) 454 - 2290

군산시 공고 제2026-2409호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폐지예규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5항(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고 개정(2025.12.30.)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기존 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 2026. 11. 23. <21일간>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 063-454-2305 / (FAX) 063-454-6006

(전자우편) ssgghh46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기획계(063-454-2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폐지예규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폐지예규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예규 제 호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폐지예규안

군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군산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6-2443호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론화 제안(안 제3조)과 시민 연서(안 제4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소관부서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회의 및 의결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6. 11. 2. ~ 11. 23.(21일)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우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 063-454-2303 / (FAX) 063-454-6006

(전자우편) ssdw0116@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기획계(063-454-2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군산시 공론화위원회를 말한다.
2. “안건”이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론화가 제안된 주요 정책 또는 현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론화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간사”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하되,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간사로 한다.
6. “시민대표”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공론화를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를 대표하여 제안 및 연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론화의 제안 및 접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의 제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공론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2.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제안하는 경우: 시의회 의장 명의의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

3. 시민이 제안하는 경우: 시민대표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제안서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안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연서 확인을 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제안의 연서)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연서는 제안서 등을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 내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고 그 사유를 시민대표에게 알린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서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서는 무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연서

2. 같은 사람이 둘 이상 한 연서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연서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연서

4.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연서

⑤ 총괄부서의 장은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민대표와 소관 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2. 공론화의 실시 및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3. 회의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6조(회의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론화의 실시 여부, 운영 방법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즉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공론화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공론화 제안 서명부

■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론화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시민대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안건명				
제안 사유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				
연서인 수	명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시민대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공론화 제안 서명부(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공론화 제안의 접수·처리 및 처리 결과 통지
2.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3. 보유·이용 기간: 해당 공론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론화 제안의 접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안자(시민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론화 제안 서명부

안건명			
제안 사유			
시민대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주민등록 사항 확인 동의 안내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수집하는 자: 시민대표) – 목적:「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 연서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서명일 / 보유·이용 기간: 서명부를 군산시에 제출할 때까지(제출 후 사본 등은 지체 없이 파기)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공받는 자: 군산시장) – 목적: 공론화 제안의 접수 및 연서의 유효 여부 확인 / 항목: ①과 같음 / 보유·이용 기간: 해당 공론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③ 주민등록 사항 확인(확인 기관: 군산시 및 관할 읍·면·동) – 목적: 연서 자격(군산시 주민등록) 및 본인 확인 / 방법: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주민등록 사항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만 확인

※ 위 ①·②·③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연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연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개인정보 동의 (①·②·③)	서명/인
1				①□ ②□ ③□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③□	
5				①□ ②□ ③□	
6				①□ ②□ ③□	
7				①□ ②□ ③□	
8				①□ ②□ ③□	
9				①□ ②□ ③□	
10				①□ ②□ ③□	

작성방법

1. "성명"란에는 **서명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행정동**까지 적고,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명**까지 적습니다. **(예: 군산시 수송로 00 (수송동), ○○○아파트)**
3. "서명/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생년월일"란에는 **6자리(예: 800101)**로 적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동의"란에는 위 안내 ①·②·③의 각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번호의 □에 ✓ 표시를 합니다.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이현숙
연락처	(063) 454 - 2290

군산시 공고 제2026-2444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생계형 소규모 시설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급수공사비 지원 근거 마련
- 개발행위 대상,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등 지원 제외 대상 명시

나.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 개정(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23.(월) /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편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층 수도과

2) 전화 : (063)454-5404

3) 팩스 : (063)454-6043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전자우편 : peypey0719@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에서”를 “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비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수 등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3. 수도관 구경 13밀리미터의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대상 및 주말주택, 별장 등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신청인----------. ----------시가----------.
1. 읍·면지역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수 등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가정용 신설 급수공사비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급수공사비용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신 설>	3. 수도관 구경 13밀리미터의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대상 및 주말주택, 별장 등 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산시 고시 제2026-144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2.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2건, 폐지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11.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77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1길 152 (미룡동)	2026102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321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칠길 123-18 (산북동)	2026102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6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총로 60 (내흥동)	20261029		20191104	예전 내흥동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된 지점이라서 도로명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5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오동길 30-11	20261028		20130325	마을 이름 인용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14	20261028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7-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12	20261028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7-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10	20261028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8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37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183-1	20261028		20100125	화등리의 중심도로 역할	
9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5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8	20261028		20100125	마을명칭인용	
10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길 204-6		20261021	철거	20070528	동마산과 어은 사이에 영병산 소재	
1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18 (오식도동)	20261023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1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87 (오식도동)	20261023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1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0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1로 62 (오식도동)	20261019		20160323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1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60-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9-1	2026101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821-10, 818, 821-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1길 137 (미룡동)	2026101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821-1, 818, 821-4, 821-10, 821-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1길 139 (미룡동)	2026101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818, 821-1, 82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1길 141 (미룡동)	2026101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8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2길 194 (내흥동)		2026100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9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56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당길 34-5 (미룡동)	2026100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0	건물번호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90		20261007		20090710	성산면 성덕리에 금강철새 조망대가 위치, 지형명칭 반영	
2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27-39, 산131-2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90	20261007		20090710	성산면 성덕리에 금강철새 조망대가 위치, 지형명칭 반영	
2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143-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493	20261006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2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50-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241 (수송동)	20261006		20230111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2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4-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길 30	20261006		20070528	동마산과 어은 사이에 영병산 소재	
2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8-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1081	20261006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군산시 고시 제2026-14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나. 명 칭 : 군산교도소 54동 창고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182,890㎡, 주53동/지하2층~지상4층,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면적 22,738.18㎡, 연면적 44,076.15㎡
 - 금회 주1개동(54동)/1층 교정시설(창고) 연면적 21.25㎡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교도소장
 나. 주 소 :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옥구읍 옥정리	65	대	182,890	182,890	국 (법무부)				
계				182,890	182,890					

군산시 고시 제2026-15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사정동 1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운동장:군산종합운동장)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사정동 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운동장:군산종합운동장)사업

나. 명 칭 : 월명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 153,353.0㎡, 주10동/지하2~지상4층, 일반건축물, 건축면적 22,476.51㎡, 연면적 36,833.92㎡, 건폐율 14.66%(20%이하), 용적률 22.53%(100%이하)
- (금회)운동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주10동/지하1~지상1층 연면적 2,152.48㎡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8.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1	군산시 사정동	117-4	체	5,122	5,122	군산시					
2	군산시 사정동	117-9	전	55	7	군산시					
3	군산시 사정동	117-10	전	93	7	군산시					
4	군산시 사정동	119-25	체	80	9	군산시					
5	군산시 사정동	120-4	체	162	162	군산시					
6	군산시 사정동	120-5	도	4	4	군산시					
7	군산시 사정동	122-1	전	20	9	군산시					
8	군산시 사정동	123-10	임	77	8	군산시					
9	군산시 사정동	123-11	전	55	3	군산시					
10	군산시 사정동	124-5	전	162	48	군산시					
11	군산시 사정동	125	체	1,584	1,584	군산시					
12	군산시 사정동	126-5	체	58	24	군산시					
13	군산시 사정동	126-6	도	5	2	군산시					
14	군산시 사정동	132	체	7,835	7,835	군산시					
15	군산시 사정동	136	체	11,090	11,090	군산시					
16	군산시 사정동	137	체	3,944	3,944	군산시					
17	군산시 사정동	142-2	체	169	169	군산시					
18	군산시 사정동	147	체	9,433	9,433	군산시					
19	군산시 사정동	150-1	체	430	430	군산시					
20	군산시 사정동	152	체	48,508	48,508	군산시					
21	군산시 사정동	159	체	3,599	3,599	군산시					
22	군산시 사정동	441-2	체	36	36	군산시					
23	군산시 사정동	44	대	380	380	군산시					
24	군산시 사정동	448-25	체	24	24	군산시					
25	군산시 사정동	481-2	도	56	56	군산시					
26	군산시 사정동	482-2	도	13	13	군산시					
27	군산시 사정동	482-3	도	43	43	군산시					
28	군산시 사정동	482-4	도	17	17	군산시					
29	군산시 사정동	482-5	도	3	3	군산시					
30	군산시 사정동	483-7	도	28	2	군산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31	군산시 사정동	483-10	도	106	106	군산시					
32	군산시 사정동	483-21	전	347	134	군산시					
33	군산시 사정동	483-27	도	5	5	군산시					
34	군산시 사정동	483-28	도	3	2	군산시					
35	군산시 사정동	484-2	답	81	29	군산시					
36	군산시 사정동	485-6	전	31	1	군산시					
37	군산시 사정동	485-11	도	23	8	군산시					
38	군산시 사정동	485-12	도	49	12	군산시					
39	군산시 사정동	513-1	대	64	64	군산시					
40	군산시 사정동	515	대	132	132	군산시					
41	군산시 사정동	516-1	전	317	317	군산시					
42	군산시 사정동	516-2	대	251	251	군산시					
43	군산시 사정동	516-3	전	249	249	군산시					
44	군산시 사정동	516-4	전	202	202	군산시					
45	군산시 사정동	516-5	도	10	10	군산시					
46	군산시 사정동	516-6	도	20	20	군산시					
47	군산시 사정동	516-8	도	26	26	군산시					
48	군산시 사정동	516-9	도	6	6	군산시					
49	군산시 사정동	516-10	도	49	49	군산시					
50	군산시 사정동	516-12	전	318	318	군산시					
51	군산시 사정동	516-13	도	24	24	군산시					
52	군산시 사정동	518-2	대	86	86	군산시					
53	군산시 사정동	518-4	임	131	131	군산시					
54	군산시 사정동	518-5	임	72	72	군산시					
55	군산시 사정동	521-6	답	36	36	군산시					
56	군산시 사정동	521-7	도	142	142	군산시					
57	군산시 사정동	521-8	도	208	208	군산시					
58	군산시 사정동	521-9	도	51	51	군산시					
59	군산시 사정동	521-10	답	957	957	군산시					
60	군산시 사정동	521-11	구	43	43	군산시					
61	군산시 사정동	521-12	답	1,040	1,040	군산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62	군산시 사정동	522-3	전	441	441	군산시					
63	군산시 사정동	526-3	대	63	63	군산시					
64	군산시 사정동	산52	임	12,924	12,924	군산시					
65	군산시 사정동	117-2	체	65	65	국(재정경제원)					
66	군산시 사정동	131	체	31,942	31,942	국(기획재정부)					
67	군산시 사정동	146	체	6,481	6,481	국(기획재정부)					
68	군산시 사정동	148-2	체	80	80	국(기획재정부)					
69	군산시 사정동	448-29	체	10	10	국(기획재정부)					
70	군산시 사정동	562-1	체	1,092	1,092	국(기획재정부)					
71	군산시 사정동	562-2	체	1,566	1,566	국(기획재정부)					
72	군산시 사정동	562-18	도	121	121	국(재정경제부)					
73	군산시 사정동	569-1	체	856	856	국(기획재정부)					
74	군산시 사정동	120-2	도	36	36	고병주	군산시 사정동 502				
75	군산시 사정동	131-2	체	400	168	국(기획재정부)					
76	군산시 사정동	168-2	체	69	69	박중산	군산시 사정동 492				
77	군산시 사정동	483-24	도	58	6	김정숙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14				
78	군산시 사정동	483-29	도	101	101	김정숙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2길14				
79	군산시 사정동	520-4	도	4	4	국(기획재정부)					
80	군산시 사정동	562-8	도	101	5	국(농수산부)					
81	군산시 사정동	562-17	체	21	21	국(재정경제부)					
82	군산시 사정동	562-19	도	1,425	1	국(농수산부)					
합계		82필지		156,020	153,354						

군산시 고시 제2026-15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4-53호(2024.4.26.)에 의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91-3번지 외 24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 외 1개노선)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중로 2-16호선 : B=3m, L=94m, A=239㎡(완화차로 개설)
 나. 중로 2-63호선 : B=3m, L=133m, A=383㎡(완화차로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변경없음) : ㈜은성종합개발 대표 유병성
 나. 주 소(변경)
 [당초]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변경]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147-11, 1동 507호(방교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24. 4. 26. ~ 2026. 10. 30. / [변경] 2024. 4. 26. ~ 2027. 6. 2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중로 2-1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1	3	전	13	1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2	지곡동	산135	9	임	2	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지곡동	산135	11	임	20	20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4	지곡동	산135	13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지곡동	산135	15	임	19	1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6	지곡동	산135	17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7	지곡동	산135	19	임	18	1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8	지곡동	산139	3	임	25	25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9	지곡동	산140	36	임	101	10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계	9필지				239	239						

나. 중로 2-6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393	3	대	11	1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2	지곡동	396	2	대	59	59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3	지곡동	396	15	도	6	6	군산시					
4	지곡동	396	4	전	47	4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5	지곡동	396	18	도	2	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6	지곡동	396	20	도	14	14	군산시					
7	지곡동	396	21	도	3	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8	지곡동	414	6	전	64	64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9	지곡동	416	6	유	68	68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0	지곡동	416	8	도	1	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1	지곡동	417	5	전	33	33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2	지곡동	417	6	도	3	3	군산시					
13	지곡동	418	1	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4	지곡동	418	13	전	1	1	군산시					
15	지곡동	산115	7	임	27	27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6	지곡동	산117	4	임	22	22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계	16필지				383	383						

군산시 고시 제2026 - 155호

군산시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군산시 중앙동 일원 공실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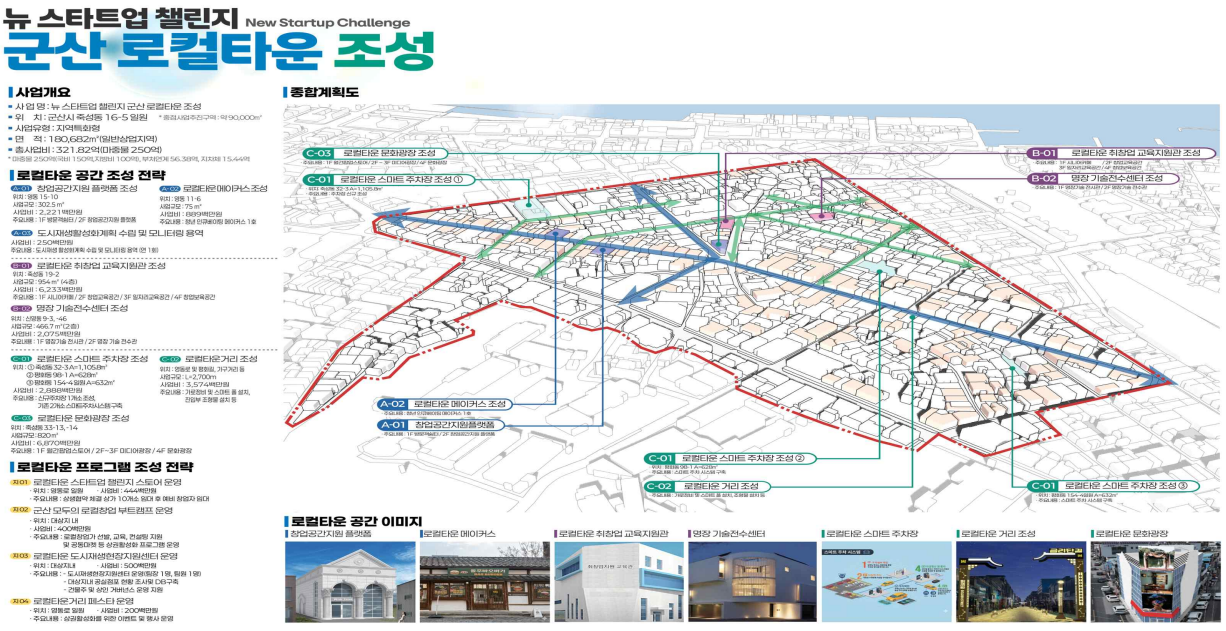
2026. 10. 26.

군산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개요 및 범위	뉴 스타트업 챌린지 군산 로컬타운 조성	지역특화형	321.82 (마중물 250)	2026~2029년
	사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죽성동 16-5번지 일원	사업면적	180,682㎡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군산시장, 군산시 청년뜰, 군산시니어클럽, 민간기업 등			
사업 필요성	■ 장기 방치 공실점포 증가에 따른 상권 쇠퇴 가속화 현상 지속 ■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에 따른 상권활성화 유도 필요			
사업내용	■ 마중물사업(8개사업), 지자체사업(4개사업)			
재원조달방안	마중물사업비 250억원(국비150/지방비100) 연차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활성화계획도



2 계획의 목표

+ 비전

뉴 스타트업 챌린지 군산로컬타운 조성

+ 전략	공실점포 적극 활용	취·창업 지원	홍보 & 집객요소 도입
+ 목표	- 대상지내 공실점포률 감축 및 창업공간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창업 지원 기반 마련	- 유관기관과 연계한 창업 점포 운영 지원 - 대상지내 노포 상인들과 연계한 기술전수 교육 운영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방문객 편의성 증대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방문객 만족도 증대 - 다양한 세대가 어울어져 활동하는 공간 조성
+ 단위사업	A. 로컬타운 창업기반 조성	B. 로컬타운 창업 활성화	C. 로컬타운 창업확대
+ 세부사업	A-1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A-2 로컬타운 메이커스 조성 A-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	B-1 로컬타운 취창업 교육지원관 조성 B-2 명장 기술전수센터 조성	C-1 로컬타운 스마트 주차장 조성 C-2 로컬타운 거리 조성 C-3 로컬타운 문화광장 조성
+ 지원사업	지-1 로컬타운 스타트업 챌린지 스토어 운영 지-2 군산 모두의 로컬창업 부트캠프 운영 지-3 로컬타운 현장지원 센터 운영		지-4 로컬타운거리 페스타 운영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A-1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22.21	- 위치 : 영동 15-10 - 사업규모 : 302.5㎡ - 도입기능 : 1F 방문자쉼터 및 개방형 화장실 / 2F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 주요내용 : 공실점포 현황 DB 구축, 상권분석 데이터 구축 및 예비창업자 정보제공
A-2 로컬타운 메이커스 조성	8.89	- 위치 : 영동 11-6 - 사업규모 : 75㎡ - 도입기능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 - 주요내용 : 로컬 메이커스 조성으로 F&B 창업 지원
A-3. 도시재생 활성화	2.50	-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추진(연 1회)

세부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		
B-1 로컬타운 취창업 교육지원관 조성	62.33	- 위치 : 죽성동 19-2 - 사업규모 : 945㎡ - 도입기능 : 1F 시니어카페/2F 제품개발실, 시니어 창업교육실/3F시니어 일자리 교육실/4F창업보육실(5호) - 주요내용 : 시니어 취창업 교육 지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공간 조성
B-2 명장 기술전수센터 조성	20.75	- 위치 : 신영동 9-3 - 사업규모 : 466.7㎡ - 도입기능 : 1F 명장기술 전시관 / 2F 명장기술 전수관 - 주요내용 : 군산시 명장 및 대상지내 기술장인(노포)의 기술 전시 및 군산시민들에게 전수하는 공간 활용
C-1 로컬타운 스마트 주차장 조성	28.88	- 위치 및 면적 : 죽성동 32-3 A=1,105.8㎡/평화동 98-1 A=628㎡ 평화동 154-4 A=632㎡ - 주요내용 : 신규 주차장 조성(죽성동 32-3) 및 스마트 주차장 기능 도입
C-2 로컬타운 거리 조성	35.74	- 위치 : 영동로 및 가구거리, 평화길 일원 - 사업규모 : L=2,700m / B=6~8m - 주요내용 : 가로정비 및 스마트폴 설치, 진입부 조형물 설치 등
C-3 로컬타운 문화광장 조성	68.70	- 위치 : 죽성동 33-13 일원 - 사업규모 : 820㎡ - 도입기능 : 1F 월간팝업스토어/2F~3F 미디어 광장/4F 문화광장 - 주요내용 : 기창업자 대상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 및 미디어 테마 청소년 및 청년 놀이 공간, 군산 테마 영화 및 공연, 전시 공간 조성으로 군산시민 방문 유도
지-1 군산 로컬타운 스타트업챌린지 운영	4.44	- 위치 : 영동로 일원 - 사업규모 : 공실점포 10개소 - 주요내용 : 공실점포 제3자임대차계약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지-2 군산 모두의 로컬창업 부트캠프 운영	4.00	- 위치 : 영동로 일원 - 주요내용 : 로컬창업자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상권활성화 공동마켓 등 운영
지-2 로컬타운 현장지원센터	5.00	- 위치 :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지-4 로컬타운 거리 페스타 사업	2.00	- 위치 : 영동로 일원 - 주요내용 :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거리 이벤트 및 행사 등 추진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

기반시설 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 내용	면적	주요기능
커뮤니티 시설	A-1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22.21	영동 15-10	A=302.5㎡	1F 방문자쉼터 및 개방형 화장실 2F 창업공간지원 플랫폼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A-2 로컬타운 메이커스 조성	8.89	영동 11-6	A=75㎡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
교육지원 시설	B-1 로컬타운 취창업 교육지원관 조성	62.33	죽성동 19-2	A=945㎡	1F 시니어카페 2F 제품개발실, 시니어 창업교육실 3F시니어 일자리 교육실 4F창업보육실(5호)
문화전시 시설	B-2 명장 기술전수센터 조성	20.75	신영동 9-3	466.7㎡	1F 명장기술 전시관 2F 명장기술 전수관
주차장	C-1 로컬타운 스마트 주차장 조성	28.88	죽성동 32-3	A=1,105.8㎡	주차장 37면 조성
문화시설	C-3 로컬타운 문화광장 조성	68.70	죽성동 33-13 일원	820㎡	1F 월간팝업스토어 2F~3F 미디어 광장 4F 문화광장

5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6 기타사항

- ㅇ 관련도서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2026. 10. 26. ~ 2026. 11. 25.)
- ㅇ 열람장소 : 군산시 도시재생과(2층)
- ㅇ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계(☎063-454-3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6-162호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고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

군 산 시 장

1.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가액(원)	사용장소	취득년월일	사후관리 (종료일)	관리기간	변동내역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2026년)	군산시 수협 비응항위판장	컨베이어벨트 2대	R/T벨트콘베어 (400*8m)	10,0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동로 30	2026.5.11.	2031.5.10.	5년	신규
	군산시 수협 제빙사업팀	전동지게차 1대	25BE-X(2.5톤) UNFCFB17AF 0000848	35,0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동로 30	2026.8.21.	2031.8.20.	5년	신규
	군산시 수협 냉동냉장사업팀	전동지게차 1대	25BE-X(2.5톤) UNFCFB17AF 0000849	35,0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82-11	2026.8.21.	2031.8.20.	5년	신규

2.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제4호(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5년동안 고시

군산시 공고 제2026-24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6-92호(2026.6.19.)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비응도동 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G2 연료전환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면적 : 99,100.9㎡

나. 건축계획(전체)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99,100.9	주16동부21동 /지하1~지상5층	32,629.4165 * 건폐율 32.9254%	25,928.075 * 용적률 24.7732%	금회 발전시설 증축

- (금회) 주12동/1층 발전시설 연면적 5.775㎡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화에너지주식회사 대표 이재규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6. 6. 19. ~ 2026. 12. 31.(준공 2026. 10. 16.)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타사항
군산시 비응도동	31	잡	99,100.9	99,100.9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기업금융3실)	근저당	공동담보목록 제2015-544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259호
	1필지		99,100.9	99,100.9						